

거래상대방 반부패 실사 업무절차

1. 목적

- 1.1 본 업무절차는 회사가 잠재적 거래상대방과 거래를 개시하기 전 해당 거래상대방의 잠재적인 반부패 위험을 평가하고 이를 적절하게 경감시키기 위하여 수행하는 반부패 실사 업무절차를 규정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용어 정의

- 2.1 본 업무절차는 『반부패 준법규정』에 기술된 정의를 적용한다.

2.2 잠재적 거래상대방

회사와 거래가 개시되지는 않았으나, 거래의 중요한 내용(예: 대금지급조건, 재화 및 서비스의 내용, 수량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합의가 이루어져 계약 체결이 합리적으로 예견되는 거래상대방을 의미한다.

3. 반부패 실사 업무절차

회사 임직원 및 회사 컴플라이언스 조직은 잠재적 거래상대방과의 계약 체결 전 본 업무절차에서 규정하는 반부패 실사를 수행한다.

3.1 예비정보수집

- 1) 회사 임직원은 잠재적 거래상대방과의 거래 관련 협의 진행 전 공개정보(법인 등록서류, 회사 웹사이트 등)를 활용하여 잠재적 거래상대방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회사명, 소재국, 대표자 등)를 수집한다.

3.2 최초위험평가

- 1) 회사 임직원은 예비정보수집단계에서 수집된 정보 및 거래 관련 협의 과정에서 확인된 정보를 토대로 아래의 위험요소 및 가중치를 기준으로 잠재적 거래상대방에 대한 최초위험평가를 진행한다.

위험요소	가중치
공직자등으로부터 해당 잠재적 거래상대방과의 계약을 체결하도록 요청 받은 적이 있다.	20
잠재적 거래상대방의 물품대금, 용역수수료 등이 일반적인 시장 요율에	20

비하여 상당히 과도하다.	
잠재적 거래상대방이 이면계약(명칭 불문)을 요구한다.	20
잠재적 거래상대방이 제공한 계약서 상에 기재된 물품 및 용역의 내용이 실제 제공될 예정인 물품 및 용역과 계약내용의 중요부분에서 차이가 존재한다.	20
잠재적 거래상대방이 아래에 해당하는 대금 지급을 요구한다. - 용역이 제공되는 국가 이외 다른 국가에 설립된 계좌를 통한 대금지급 - 잠재적 거래상대방 이외 명의 계좌(개인/법인)를 통한 지급요청 - 금융거래를 거치지 않는 방법(현금 혹은 무기명수표 등)으로 지급요청 - 비정상적인 선급금(계약 전 커미션, 수수료 사전 지급) 지급 요청	10
잠재적 거래상대방의 경영진 중, 해당 국가의 정부기관이 존재한다.	10
잠재적 거래상대방의 주요 주주(10%이상 지분 보유) 중 해당국가의 정부기관 존재한다.	10
잠재적 거래상대방이 회사 제공 준법서약서(혹은 윤리확인서)에 대한 동의 및 서명을 거부한다.	10
잠재적 거래상대방(i.e.대리인, 에이전시)이 회사를 대리하여 정부기관 혹은 규제기관의 공직자등과 교류할 예정이다.	5
잠재적 거래상대방(i.e. 대리인, 에이전시)이 회사를 대리하여 인허가 취득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5
잠재적 거래상대방의 사업이 수행되는(혹은 수행예정인) 국가의 부패인식지수(Corruption Perception Index) 점수가 50점 미만이다.	5
잠재적 거래상대방이 업무경험, 업무성과, 임직원의 전문성보다 정부인맥에 과도하게 의존하거나, 정부기관/공무원에 대한 친분 또는 영향력을 과도하게 중시한다.	5

2) 상기 위험요소의 총 가중치에 따라서 아래와 같이 잠재적 거래상대방의 최초위험평가등급을 분류한다.

- 고위험(High risk) – 총 가중치 20점 이상인 경우
- 표준위험(Medium risk) – 총 가중치 20점 미만인 경우

3) 회사 임직원은 상기 2)에 따라 '고위험'으로 분류된 잠재적 거래상대방 및 최초 위험평가 결과를 회사 컴플라이언스 조직에 통보하여야 한다.

3.3 실사

1) 기초실사: 회사 컴플라이언스 조직은 고위험으로 분류된 잠재적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첨부2. 실사 질의서]를 송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발생 가능한 반부패 위험의 식별 및 평가를 위해 필요한 추가 정보를 수집한다.

- 2) 심화실사: 회사 컴플라이언스 조직은 상기 1)에 따라 수집된 정보 및 잠재적 거래상대방의 답변에 따라 잠재적 거래상대방의 주요 임직원에 대한 인터뷰 및 독립적인 제3자(외부전문가)를 통한 실사절차(Due diligence) 등의 방법으로 심화실사를 수행할 수 있다.

3.4 위험등급 재평가

회사 컴플라이언스 조직은 3.3의 실사를 완료한 후 잠재적 거래상대방에 대한 위험평가등급을 재평가할 수 있다.

3.5 위험경감조치

실사절차에서 확인된 정보를 토대로 컴플라이언스 조직은 아래의 방법을 포함한 적절한 경감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만, '고위험'으로 평가된 잠재적 거래상대방에 대하여는 아래의 방법 중 최소한 1개 이상의 조치를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 잠재적 거래상대방과의 계약서 상, 반부패 준법 조항의 포함
- 잠재적 거래상대방과의 계약서 상, 회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잠재적 거래상대방의 회계장부 및 기타 관련 증빙을 감사할 수 있는 권리 조항의 포함
- 잠재적 거래상대방과의 계약서 상, 반부패 관련 법률을 포함하여 특정 법률의 위반이 발생할 경우 회사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 조항의 포함
- 잠재적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서명된 준법확인서의 수령
- 잠재적 거래상대방의 임직원에 대한 컴플라이언스 교육 진행 요구
- 잠재적 거래상대방이 공직자등과 빈번하게 교류를 하는 경우, 잠재적 거래상대방과 공직자등의 각 교류에 대한 상세한 일지 작성 요구(예: 공직자등의 신원 및 소속, 공직자등과의 교류 사유, 공직자등에게 지급된 금전 및 선물의 존재여부 및 내용 등)

3.6 실사 과정의 문서화

회사 컴플라이언스 조직은 잠재적 거래상대방에 대한 실사 종료 후,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는 실사 관련 문서를 작성·보관한다.

- 수행된 실사 단계 및 그 증빙

- 주요 결과(확인된 위험 내용 포함)
- 진행된 주요 경감 조치 및 개선 조치

4. 반부패 위험 모니터링

- 4.1** 회사 임직원은 잠재적 거래상대방과의 계약 체결 이후, 반부패 위험 모니터링을 정기적으로 수행하여 거래상대방의 반부패 관련 법규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4.2** 회사 컴플라이언스 조직은 상기 4.1의 모니터링 수행을 위하여 거래상대방과의 거래를 담당하는 회사 임직원에게 [첨부3. 반부패 위험 모니터링 checklist]에 따른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 4.3** 컴플라이언스 조직은 본 업무절차의 제정 전 회사의 거래처로 등록된 거래상대방들에 대한 반부패 위험평가를 상기 4.1 및 4.2에 따른 모니터링에 준하여 수행할 수 있다.

5. 고위험 거래상대방에 대한 내부통제

- 5.1** 회사 임직원은 최초위험평가 또는 위험등급 재평가 결과 '고위험'으로 분류된 잠재적 거래상대방과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또는 대금 지급 등의 거래를 개시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회사 컴플라이언스 조직의 협조를 거쳐야 한다.
- 5.2** 회사 컴플라이언스 부서는 본 업무절차 4(반부패 위험 모니터링)를 통하여 반부패 위험이 높은 것으로 확인된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본 업무절차 3.5(위험경감조치) 또는 이에 준하는 조치를 권고할 수 있으며, 회사 임직원은 이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